

V. 부 록

부록1. 국제전파감시 관계법령

부록2. 국가별 전파분야 연락체계

부록3. KBS World Radio 방송시간 및 주파수

부록4. 무선국종 표기(영문)

부록1. 국제전파감시 관련법령

국내 관련법

1. 전파법

제50조 (국제전파감시)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외국의 무선국이 발사한 전파의 감시, 혼신 분석 및 제거 등 국제전파감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용하여야 한다.<개정 2008.6.13>

2. 전파법시행령

제123조 (권한의 위임·위탁) ① 생략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12.9>

1 ~ 14. 생략

15. 법 제49조 및 법 제50조에 따른 전파감시 및 국제전파감시 업무

16 ~ 24. 생략

3. 방통위 고시 제2008-102호 :

전파감시·조사 및 행정처분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12조(국제전파감시) ① 소장은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전파감시(이하 "국제감시"라 한다)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외국무선국의 운용이 국제전기통신협약 및 전파규칙, 기타 전파관련조약에 적합한가의 여부를 확인한다.

② 국제전기통신연합 전파통신국(ITU BR) 및 외국 전파통신주관청으로부터 전파감시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완급을 구분하여 실시하되, 감시결과의 정확성 및 신뢰성에 유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소장은 국제감시 결과 그 외국무선국이 조약 등의 규정에 위반된 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국내무선국에 혼신을 준 사실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무선국의 운용 및 경미한 혼신 사항은 전파규칙(ITU-RR) 16의 규정에 따라 동 부록 9의 위반통보서를 작성하여 그 무선국이 속하는 나라의 주관청에 송부한다.
2. 유해한 혼신으로서 주파수 분배 원칙 위반 또는 고의적인 방해 등으로 국제간 조정이 필요한 사항은 전파규칙(ITU-RR) 부록 10에 따른 혼신통보서 2부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한다.
3. 혼신상황이 중대하여 신속한 처리를 요하는 것은 즉시 위원회에 보고한다.
4. 국제전기통신연합 전파통신국(ITU BR) 및 외국 전파통신주관청으로부터 통보 받은 위반사항과 혼신사항에 대하여는 전파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유해한 혼신으로서 국제간 조정이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지시에 의하여 처리한다.

1. ITU-RR(Radio Regulations) (제15조, 제16조)

제15조(혼신)

제 1 절 — 무선국으로부터의 혼신

15.1 §1 모든 무선국에게 불필요한 송신, 필요이상의 여분의 신호의 송신, 의사(疑似)신호 또는 수신목적의 신호인 것처럼 오인될 수 있는 거짓신호의 송신, 또는 식별 신호 없는 송신(제19조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한)을 수행하는 것을 금지한다.

15.2 §2 송신국은 만족할만한 업무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전력만을 복사하여야 한다.

15.3 §3 혼신을 피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규정이 준수되어야 한다.
(제3조와 제22.1호도 참조할 것)

15.4 a) 송신국의 위치와 업무의 성질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수신국의 위치는 각별히 신중하게 선정되어야 한다.

15.5 b) 불필요한 방향으로의 복사와 불필요한 방향으로부터의 수신은 업무의 성질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언제나 지향성안테나 특성의 실제적 이점을 최대한 이용함으로서 최소화하여야 한다.

15.6 c) 송신기와 수신기의 선택과 사용은 제3조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15.7 d) 제22.1호에 규정되어 있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15.8 §4 제31조에 정의된 조난과 안전 관련 주파수와 부록 27에 정한 항공기의 안전 및 질서에 관련된 주파수 등 조난과 안전 주파수에 대한 간섭을 피하기 위한 특별한 검토가 주어져야 한다.

15.9 §5 각 무선국에 의하여 채용될 발사종별은 혼신의 최소화와 주파수 스펙트럼의 효율적 이용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이것은 이러한 목표를 충족시키기 위한 발사종별을 선정함에 있어서 무선국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의 운용과 기술적 고려사항을 감안하여 점유대역폭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는 것을 요구한다.

15.10 §6 송신국의 대역의 발사는 이 규칙의 규정에 따라 인접주파수 대에서 운용하고 3.3, 3.11, 3.12와 3.13 및 관련 ITU-R 권고와 일치하는 수신기를 사용하는 업무에 대하여 유해혼신을 야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15.11 §7 만약 어떤 무선국이 제3조에 규정되어 있는 기술적 특성을 충족시키기는 하면서도 스피리어스 발사를 통하여 유해혼신을 야기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혼신을 제거하기 위한 특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제 2 절 — 공업용, 과학용 및 의료용 응용목적으로 사용되는 고주파이용기기와 설비를 제외한 어떠한 종류의 전기기기와 설비로부터의 혼선

15.12 §8 공업용, 과학용 및 의료용 응용목적으로 사용되는 고주파이용기기와 설비를 제외한 전력송배전망과 전기통신배선망을 포함하는 어떠한 종류의 전기 기기 또는 설비의 운용도 전파규칙에 따라 운용하는 어떠한 무선통신 업무에 대하여도 특히 무선행정 또는 기타 어떠한 안전업무에 대하여도 유해혼신 또는 간섭을 야기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실행가능하고 필요한 모든 수단방법과 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하여야 한다¹⁾)

1) 15.12.1 과 15.13.1 이 사항에 관해서는 주관청은 관련 최신 ITU-R 권고를 지침으로 사용하여야

제 3 절 — 공업용, 과학용 및 의료용 응용 목적으로 사용되는 고주파이용기기와 설비로부터의 혼신

15.13 §9 모든 주관청은 공업용, 과학용 및 의료용 응용목적으로 사용되는 고주파이용기기와설비로부터의 복사를 최소화하고 이러한 기기와 설비용으로 지정된 주파수대(ISM bands)를 벗어난 주파수대에서의 이러한 기기와 설비로부터의 복사의 레벨이 전파규칙에 따라 운용하는 어떠한 무선통사업무에 대하여도 특히 무선행행 또는 기타 어떠한 안전업무에 대하여도 유해혼신 또는 간섭을 야기하지 아니하는 레벨로 유지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실행가능하고 필요한 모든 수단방법과 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하여야 한다.²⁾

제 4 절 — 각종시험

15.14 §10 1) 각 주관청은 어떠한 무선국에 대하여도 무선국에 있어서의 각종 시험과 실험을 승인하기 전에 유해혼신을 피하기 위하여 시험이나 실험 주파수와 시간의 선택, 복사의 저감 또는 가능한 모든 경우에는 복사의 억제와 같은 가능한 모든 사전주의사항을 지시하여야 한다. 시험과 실험으로 기인되는 유해혼신은 어떠한 것이라도 지체 없이 최단 시간 내에 제거되어야 한다.

15.15 2) 각종 시험, 조정 또는 실험을 하는 동안에 이루어지는 송신의 식별표시에 관한 규정은 제19조를 참조할 것.

15.16 3) 항공항행업무에 있어서는 이미 사용 개시되어 업무에 사용되고 있는 장치를 점검하거나 조정하기 위하여 발사가 수행되는 동안에 통상의 식별정보를 송신하는 것은 안전상의 이유에서 바람직하지

한다.

2) 15.12.1 과 15.13.1 이 사항에 관해서는 주관청은 관련 최신 ITU-R 권고를 지침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아니하다. 그러나 송신국의 식별정보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발사는 최소한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15.17 4) 시험과 조정목적으로 발사되는 신호는 전파규칙 또는 국제신호서(International Code fo Signals)에 의하여 정의되어 있는 특별한 의미를 갖는 신호, 약어등과 아무런 혼동을 발생시키지 아니할 어떤 방법으로 선정되어야 한다.

15.18 5) 이동업무의 무선국의 시험에 관한 규정은 57.9를 참조할 것.

제 5 절 — 위반사례의 보고

15.19 §11 현장, 협약 또는 전파규칙의 위반사례는 그것을 탐지한 감독기관(통제기관), 무선국 또는 검사관에 의하여 각각의 소속 주관청으로 보고되어야 한다. 이 목적으로 보고하는 기관과 개인은 부록 9에 제시되어 있는 견본과 유사한 서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15.20 §12 어떤 무선국에 의하여 범하여진 중대한 위반사항에 관한 진정(항의)은 그것을 탐지한 주관청에 의하여 그 무선국을 관할하는 국가의 주관청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15.21 §13 만약 주관청이 그 관할 하에 있는 무선국에 의하여 범하여진 협약 또는 전파규칙의 위반사항에 관한 정보를 입수한 경우에는 위반사실을 확인하고 책임을 규명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6 절 — 유해혼신문제의 해결절차

15.22 §14 모든 회원국이 현장의 제45조와 이절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대한의 호의와 상호협력을 발휘하는 것이 유해혼신문제의 해결에 필수불가결하다.

15.23 §15 유해혼신문제의 해결에 있어서는 주파수의 조정, 송신과 수신안테나 특성의 조정, 시분할 공용, 다중송신채널내의 채널의 변경과 같은 기술과 운용요소를 포함하는 모든 관련 요인이 충분히 적절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15.24 §16 이 절에서 사용되는 “주관청”이라는 용어는 16.3의 규정에 따라 주관청에 의하여 지정된 중앙감시국을 포함할 수 있다.

15.25 §17 모든 주관청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6조에 규정되어 있는 시설을 활용하고 이 절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절차를 적용하여 유해혼신의 탐지와 제거에 협력하여야 한다.

15.26 §18 실행가능하고 관계주관청간에 합의가 성립되는 경우에는 각 주관청에 의하여 특별히 지정된 감시국에 의하여 유해혼신사례가 직접 처리되거나 또는 각 주관청 관할하의 운용기관 상호간의 직접적인 조정을 통하여 처리될 수 있다.

15.27 §19 유해혼신에 관한 모든 상세한 정보가 가능하면 언제나 부록 10에 명시되어 있는 형식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15.28 §20 조난과 안전 주파수 및 항공기의 안전 및 질서 유지에 사용하는 주파수에서의 송신(제 31조와 부록 13 및 부록 27 참조)은 절대적 국제 보호를 필요로 하며, 그러한 송신에 대한 유해간섭의 제거는 의무적임을 인식하고, 모든 주관청은 그러한 유해 간섭에 관한 통보를 받거나 주의가 환기되면 즉시 조치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15.29 §21 신속한 조치가 요구되는 유해혼신의 경우에 있어서는 주관 청간의 통신연락은 이용 가능한 가장 신속한 수단에 의하여 전송되어야 하며, 유해혼신의 제거에 관한 관계주관청간의 합의 또는 협정에 따라

국제감시시스템의 감시국으로 특별히 지정된 감시국간에 유해혼신에 관한 정보가 직접 교환될 수 있다.

15.30 §22 그러한 유해혼신의 사례가 수신국에 의하여 보고되는 경우에는 그 수신국은 혼신을 받고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송신국에게 모든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여 그 송신국이 혼신원과 혼신의 특성을 식별하고 결정하는데 조력하여야 한다.

15.31 §23 만약 수신국에 의하여 보고된 유해혼신이 보고된 바와 같은 판명되는 경우에는 그 수신국을 관할하는 유해혼신인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유해혼신을 받고 있으며 그것을 보고한 수신국을 관할하는 주관청은 간섭을 받고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송신국을 관할하는 주관청에게 그 사실을 통고하고 모든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5.32 §24 만약 그 유해혼신의 혼신원과 특성을 식별하고 결정하여 그 유해혼신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기 위하여 더 많은 관측과 측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간섭을 받고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송신국의 관할 주관청은 타주관청 특히 그 간섭을 경험하고 보고한 수신국의 관할 주관청 또는 기타기관(감시기관)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15.33 §25 유해혼신이 우주국으로부터의 발사에 기인되는 혼신인 경우에는 간섭을 야기하는 우주국의 관할 주관청은 간섭을 받고 있는 무선국의 관할 주관청이 요청하면 그 요청에 응하여 우주국의 위치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우주국의 위치가 다른 방법으로 판명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우주국의 위치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최신의 순간적 위치 추적데이터를 제공하여야 한다.

15.34 §26 유해혼신의 혼신원과 특성을 확인한 후에 혼신을 받고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송신국의 관할 주관청은 혼신을 야기하는 무선국의 관할 주관청에게 통보하고 그 주관청이 혼신을 제거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데 필요한 모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5.35 §27 자신의 관할 하에 있는 무선국이 유해 간섭을 야기하는 간섭원이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통보를 접수한 주관청은 가능한 한 신속하게 가장 빠른 수단으로 그 정보를 접수했음을 알려야 한다. 그러한 정보의 접수 확인 통보는 그 유해 간섭에 대한 책임의 수용요건이 되지는 아니한다.

15.36 §28 안전업무가 유해혼신을 받는 경우에는 그 혼신을 받는 수신국의 관할 주관청은 간섭을 야기하는 무선국의 관할 주관청과 직접 교섭을 할 수 있다. 간섭을 받고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송신국을 관할하는 주관청의 사전승인을 얻어 다른 유해혼신의 경우에 있어서도 동일한 절차를 취할 수 있다.

15.37 §29 자신의 관할 하에 있는 무선국이 안전 업무에 대하여 유해 간섭을 야기하고 있다는 내용의 통신 연락을 접수한 주관청은 즉시 문제를 조사하고, 필요한 모든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하며, 적시에 회신하여야 한다.

15.38 §30 지구국에 의하여 제공되는 업무가 유해혼신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한 혼신을 받는 수신국의 관할 주관청도 간섭을 야기하고 있는 무선국을 관할하는 주관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다.

15.39 §31 만약 이절에 규정되어 있는 위의 절차에 따라 조치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유해혼신이 제거되지 아니하고 지속되는 경우에는 혼신을 받고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송신국의 관할 주관청은 혼신을 야기하고 있는 무선국의 관할 주관청에게 제V절의 규정에 따라 위법 또는 위반 행위의 시정을 촉구하는 보고서를 송부할 수 있다.

15.40 §32 만약 어떤 특정업무를 관장하는 전문국제기구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 업무의 무선국에 의하여 야기된 유해혼신 또는 이 업무의 무선국이 받은 유해혼신과 관련되는 불법 또는 위반행위의 시정을

촉구하는 보고서를 관계주관청에게 송부됨과 동시에 그러한 전문국제 기구에게도 송부될 수 있다

15.41 §33 1) 만약 관계주관청이 필요하다고 고려하는 경우와 특히 만약 이절에 규정되어 있는 위의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만족할 만한 서오가가 성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주관청은 그러한 유해혼신의 사례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전파통신국으로 제출하여 참고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15.42 2) 이와 같은 경우에는 관계주관청은 전파통신국에게 제13조 제1절의 규정에 따라 조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관계주관청은 모든 기술적 및 운용상의 상세한 내용과 통신연락문의 사본을 포함하는 그 유해혼신사례에 관한 완전한 전모를 전파통신국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5.43 §34 1) 주관청이 HF주파수대에서 유해혼신을 야기하는 혼신원을 식별하는데 곤란을 겪고 있으며 긴급하게 전파통신국의 원조를 요청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 주관청은 신속하게 전파통신국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5.44 2) 이 정보를 접수하면 전파통신국은 즉시 그 유해혼신원의 식별에 조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주관청 또는 특별히 지정된 국제감시시스템의 감시국의 협력을 요청하여야 한다.

15.45 3) 전파통신국은 15.44의 규정에 의한 협력요청에 응하여 제출된 모든 보고 내용을 종합하고 그 종합된 정보와 기타 전파통신이 이용할 수 있는 기타의 정보를 사용하여 즉시 그 유해간섭원을 식별하기 위한 작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15.46 4) 그 다음에 전파통신국은 유해혼신을 보고한 주관청으로 전파통신국의 결론과 권고사항을 통보하는 한편 유해혼신원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주관청으로 전달하여 신속한 시정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6조(국제감시)

16.1 전파규칙의 이행에 있어서 실행 가능한 최대한도로 조력하기 위하여, 특히 무선 주파수 스펙트럼의 효율적이며 경제적인 사용을 보장하는데 조력하기 위하여 그리고 유해혼신의 신속한 제거에 조력하기 위하여, 모든 주관청은 관련 ITU-R 권고를 참작하여 감시시설의 개발 확충을 계속 추진하고 국제감시시스템의 지속적인 개발 확충에 있어서 실행 가능한 최대한도로 협력하는데 동의 한다.³⁾

16.2 국제감시시스템은 주관청이 국제감시시스템의 감시국으로서 지명하여 ITU-R 권고 SM.1139에 따라 사무총장에게 통보하는 감시국만으로 구성된다. 국제감시시스템의 감시국은 주관청에 의하여 운용되거나, 주관청이 부여한 권한에 따라 공기업 또는 사기업에 의하여 운용되거나, 2개 또는 그 이상의 국가에 의하여 설치된 공동감시기관에 의하여 운용되거나 또는 국제 감시기관에 의하여 운용될 수도 있다.

16.3 국제감시시스템에 참여하고 있는 각 주관청, 2개 또는 그 이상의 국가에 의하여 설치된 공동감시기관 또는 국제감시기관은 각각 1개의 집중감시국(centralizing office)을 지정하여야 한다.

3) 16.1.1 이 주제에 관한 정보는 스펙트럼 감시에 관한 ITU-R 핸드북내에도 제공되어 있다

그리하여 모든 감시정보의 요청이 이 집중감시국으로 제출되고 감시 정보가 이 집중감시국을 경유하여 전파통신국 또는 타주관청의 집중 감시국으로 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16.4 그러나 위의 각 규정은 주관청, 국제기구, 또는 공기업이나 사기업에 의하여 설치된 특수목적의 사설(또는 전용의) 감시체제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야 한다.

16.5 모든 주관청은 실행가능하다고 고려하는 최대한도로 타주관청 또는 전파통신국이 요청하는 감시를 수행하여야 한다.

16.6 국제감시시스템의 이용과 운용에 관한 행정적요건과 절차적 요건은 ITU-R 권고 SM.1139에 따라야 한다.

16.7 전파통신국은 국제감시시스템에 참여하고 있는 감시국이 보고하는 감시결과를 기록하고 접수된 유용한 감시 데이터의 개요와 그러한 데이터를 제출한 감시국의 목록을 정기적으로 작성하여 사무총장이 발간하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16.8 어떤 주관청이 국제감시시스템에 참여하고 있는 그 소속의 감시국으로부터 보고된 감시결과와 의견을 제출함에 있어서 명확하게 식별된 어떤 발사가 전파규칙을 준수하지 아니한다고 전파통신국으로 통보하는 경우에는 전파통신국은 그러한 통보와 의견에 대하여 관계주관청의 주의를 환기시켜야 한다.

2. ITU-RR(Radio Recommendation)

ITU-R 권고안 SM.1139 (국제전파감시시스템)

ITU 전파통신 총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 (a) 전권위원회의(니스, 1989년) 결의 8에 의해서 구성되었고, 추가전권위원회의(제네바, 1992년) 결의 8에 따라서 작업이 계속되었던 전파 규칙(RR)의 단순화와 무선 주파수 스펙트럼의 분배 및 사용의 개선을 연구하기 위한 전문가지원반(VGE)의 최종 보고서와 권고.
- (b) 1995년 세계전파통신회의(WRC-95)는 단순화된 RR에 대한 적합한 제안으로서 고려하고 채택할 것이라는 것
- (c) RR의 구현에서, 특히 무선 주파수 스펙트럼의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사용을 돋고, 유해한 혼신의 신속한 제거를 돋기 위한 실행 가능한 범위에 대해 노력하기 위한 필요
- (d) 단순화된 RR의 관련된 규정이 국제 감시 시스템의 사용과 운영에 대한 행정 및 절차상의 요구조건은 본 권고 규정을 따를 것이라는 점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

아래 사항을 권고한다.

1 감시 관찰을 요청한다는 점에서, 주관청과 전파통신국은 국제 감시국 목록에서 발표된 감시 시설을 고려해야 하며 관찰이 요구되는 목적과 필요한 감시 작업의 매개변수(적합한 시간표를 포함하여) 양자를 명백하게 상술해야

* 세계 전파통신회의 1995(WRC-95)에서 개정된 전파규칙에서 본 권고에 대한 기준이 작성되었다.

이것은 1998년 6월 1일부터 유효하다.

한다. 적합하다면, 타 주관청으로 발송한 이러한 감시의 결과는 역시 전파통신국으로 보내야 한다.

2 국제 감시 시스템에 참여하지 않은 국제기관들로부터의 감시 요청은 전파통신국에 의해서 조정되어야 하고, 적합하다면 주관청으로 전송되어야 한다.

3 감시국에 의해 관찰되기 위해서 전파통신 총회에서 권고된 기술적인 표준은 국제 감시 시스템에 참여하는 감시국에 대한 최적의 실용적인 기술 표준으로서 전파통신국에 의해 승인될 것이다.

4 감시 데이터에 대한 약간의 필요성을 만족시키기 위해, 더 낮은 기술 표준을 관찰하는 국은 주관청의 재량하에 국제 감시 시스템에 참여할 수도 있다.

5 감시국이 적합한 기술 표준을 만족시키는지를 결정하는 주관청은, 국제 감시 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는 국들을 명백히 식별하는 목록 VIII에 포함되길 희망하는 중앙 관청과 국에 관한 적절한 정보를 전파통신국에 통지할 것이다.

6 전파통신국이나 다른 주관청에 전송되는 측정 결과(주 1 참조)는 시간 측정에서 얻어진 평가된 정확도를 나타낼 것이다.

주1 - 감시국에 의해 주어지는 결과가 의심스럽거나 불충분하게 보이는 곳에서는, 전파통신국은 관계된 주관청이나 국제 조직에 적합한 세부사항을 줄것을 권고하고 있다.

7 주관청은 감시 관찰사항(부기 1 참조)이 가능한 한 조속히 전파통신국에 제출되도록 조치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할 것이다.

부록2. 국가별 전파분야 연락체계

국가명	기관명	주 소	전 화	팩 스	이메일
Australia	Australian Communications Authority	Communications Operations and Service Group P.O.Box 78 Belconnen A.C.T.2616	+61 2 62195429	+61 2 62195393	itu.terrestrial@aca.gov.au
Austria	Federal Ministry for Transport, Innovation and Technology Section III Centralizing Office for Monitoring	Ghegastrasse 1 1030 Wien	+43 1 71162 654224	+43 1 71162 654209	zdf@bmvit.gv.at ernst.cerny@bmvit.gv.at
Canada	Director General Radiocommunication and Broadcasting Regulatory Branch(DGRB) Industry Canada	300 Slater Street Ottawa, Ontario K1A 0C8	+1 613 9983819	+1 613 9529871	canada@ic.gc.ca
China	State Radio Monitoring Center of China(SRMC)	Monitoring Division No.80, Bei Li Shi Street Xi Cheng District Beijing 100037	+86 10 68344196	+86 10 68344196	
Germany	Bundesnetzagentur Referat 511	Postfach 8001 55003 Mainz	+49 6131 185419	+49 6131 185602	511.postfach@bnetza.de
France	Agence Nationale des Fréquences(ANFR) Bureau Centralisateur National(BCN) ANFR/DTCS/BCN	78,avenue du General de Gaulle B.p.400 94704 Maisons-Alfort Cedex	+33 1 45187391 +33 1 45187388	+33 1 45187309	bcn@anfr.fr
United Kingdom	Ofcom	Ofcom Headquarters Riverside House 2a Southwark Bridge Road London SE1 9HA	+44 20 7981 3109	+44 20 7981 3208	ifc.enquiries@ofcom.org.uk
Italy	Ministero dello Sviluppo Economico-Comunicazioni Direzione Generale per la Pianificazione e Gestione delle Frequenze	Viale America 201 00144 Roma	+39 06 5444 4945	+39 06 5914249	
India	Wireless Adviser to the Government of India Wireless Planning and Coordination Wing Ministry of Communications Government of India	Dak Bhavan Parliament Street New Delhi 110001	+91 11 3755420 +91 11 3032776	+91 11 3716111	
Indonesia	Directorate of Radio Frequency Spectrum and Satellite Orbit Directorate General of Posts and Telecommunications(DG Postel)	Jalan Medan Merdeka Barat No.17 10110 Jakarta	+62 21 3835991	+62 21 3522915	

국가명	기 관 명	주 소	전 화	팩 스	이메일
Iran	Ministry of PTT Directorate General of Telecommunications	Dr.Shariati Ave P.O.Box 15875-4415 15598 Tehran	+98 21 8403612	+98 21 867999	
Japan	Telecommunications Bureau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and Communications	Director General Telecommunications Bureau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and Communications 1-2, Kasumigaseki 2-chome chiyoda-ku Tokyo 100-8926	+81 3 52535911	+81 3 52535915	y5.kobayashi@s oumu.go.jp
Philippines	National Telecommunications Commission	Vibal Building Epifanio de los Santos Avenue(EDSA) Corner Time Street Quezon City	921-71-28 98-11-60	921-71-28	
Singapore	Infocomm Development Authority of Singapore	8,Temasek Boulevard No. 14-00 Suntec Tower 3 Singapore 038988	+65 6211 0888	+65 6211 2222	
Thailand	Office of the National Telecommunications Commission	87 Phaholyothin Road 8 Bangkok 10400	+662 2710151/6 0		
USA	Enforcement Bureau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Chief,TPSD-NOG Enforcement Bureau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Washington, D.C. 20554	+1 202 4181192	+1 202 4182813	hfdf@fcc.gov
Uzbekistan	Centre of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Comunications and Information Agency of Uzbekistan	10,Kirk kiz street 100115 Tashkent	+998 71 1204134 +998 71 1204135 +998 71 1204138	+998 71 1203021	cems@cemc.uz
VietNam	Radio Frequency Directorate	115 Tran Duy Hung Str. Cau Giay District Ha Noi	+84 45564926	+84 45564930	ttdh@rfd.gov.vn

부록3. KBS World Radio 방송시간 및 주파수

▶ 유럽

언어	방송시간(UTC)	주파수(kHz)
우리말 1	16:00 ~ 18:00	7275
	17:00 ~ 19:00	9515
우리말 2	07:00 ~ 08:00	9870(Skelton)
러시아어	18:00 ~ 19:00	15360(Rampisham)
영어 1	16:00 ~ 17:00	9515
	18:00 ~ 19:00	7275
영어 2	14:30 ~ 15:00	9660(DRM)
	21:00 ~ 21:30	3955(Skelton)
프랑스어	19:00 ~ 20:00	6145(Skelton)
독일어	20:00 ~ 21:00	3955(Skelton)
스페인어	06:00 ~ 07:00	6045(Sackville)

▶ 북미

언어	방송시간(UTC)	주파수(kHz)
우리말 2	14:00 ~ 15:00	9650(Sackville)
영어 1	12:00 ~ 13:00	9650(Sackville)
스페인어	02:00 ~ 02:30	9560(Sackville)

▶ 남미

언어	방송시간(UTC)	주파수(kHz)
우리말 2	03:00 ~ 04:00	11810
영어 1	02:00 ~ 03:00	9580
스페인어	01:00 ~ 02:00	9580
	11:00 ~ 12:00	11795(Sackville)

▶ 동남아시아

언어	방송시간(UTC)	주파수(kHz)
우리말 1	09:00 ~ 11:00	9570
영어 1	08:00 ~ 09:00 13:00 ~ 14:00	9570 9570, 9770
인도네시아어	12:00 ~ 13:00	9570
	14:00 ~ 15:00	9570
	22:00 ~ 23:00	9805
중국어	11:30 ~ 12:30	9770
	23:00 ~ 24:00	9805
베트남어	12:30 ~ 13:00	9770
	14:30 ~ 15:00	9640

▶ 중동·아프리카

언어	방송시간(UTC)	주파수(kHz)
우리말 1	16:00 ~ 18:00	9705
우리말 2	09:00 ~ 10:00	15160
아랍어	19:00 ~ 20:00	15365(Rampisham)

▶ 중국

언어	방송시간(UTC)	주파수(kHz)
중국어	11:30 ~ 12:30 22:00 ~ 23:00	6065 7275

▶ 일본

언 어	방송시간(UTC)	주파수(kHz)
일본어	02:00 ~ 03:00	11810
	08:00 ~ 09:00	7275
	11:00 ~ 12:00	6155
	12:00 ~ 13:00	7275
	24:00 ~ 01:00	1170(MW)
		11810

▶ 모스크바

언 어	방송시간(UTC)	주파수(kHz)
러시아어	20:30 ~ 21:00	738(AM)

▶ 자카르타

언 어	방송시간(UTC)	주파수(kHz)
인도네시아어	19:00 ~ 20:00	102.6(FM)

▶ 무지향

언 어	방송시간(UTC)	주파수(kHz)
우리말 1	09:00 ~ 11:00	7275
우리말 2	10:00 ~ 11:00	1170(MW)
	12:00 ~ 13:00	7275
중국어	13:00 ~ 14:00	1170(MW), 7275
러시아어	11:00 ~ 12:00	1170(MW)

부록4. 무선국종 표기(영문)

구 분	내 용
AL	Aeronautical radionavigation land station
AM	Aeronautical radionavigation mobile station
AT	Amateur station
AX	Aeronautical fixed station
BC	Broadcasting station, sound
BT	Broadcasting station, television
EA	Space station in the amateur-satellite service
EB	Space station in the broadcasting-satellite service(sound broadcasting)
EC	Space station in the fixed-satellite service
ED	Space telecommand space station
EE	Space station in the standard frequency-satellite service
EF	Space station in the radiodetermination-satellite service
EG	Space station in the maritime mobile satellite service
EH	Space research space station
EI	Space station in the mobile-satellite service
EJ	Space station in the aeronautical mobile-satellite service
EK	Space tracking space station
EM	Space station in the meteorological-satellite service
EN	Space station in the radionavigation-satellite service
EO	Space station in the aeronautical radionavigation-satellite service
EQ	Space station in the maritime radionavigation-satellite service
ER	Space telemetering space station
ES	Station in the inter-satellite service
ET	Space station in the space operation service
EU	Space station in the land mobile-satellite service
EV	Space station in the broadcasting-satellite service(television)
EW	Space station in the earth exploration-satellite service

구 분	내 용
EY	Space station in the time signal-satellite service
FA	Aeronautical station
FB	Base station
FC	Coast station
FD	Aeronautical station in the aeronautical mobile (R) service
FG	Aeronautical station in the aeronautical mobile (OR) service
FL	Land station
FP	Port station
FX	Fixed station
LR	Radiolocation land station
MA	Aircraft station
ML	Land mobile station
MO	Mobile station
MR	Radiolocation mobile station
MS	Ship station
NL	Maritime radionavigation land station
NR	Radionavigation mobile station
OD	Oceanographic data station
OE	Oceanographic data interrogation station
PL	Combination of two or more classes of station(limited to collective entries made under the terms of RR2184)
RA	Radio astronomy station
RM	Maritime radionavigation mobile station
RN	Radionavigation land station
SM	Meteorological aids station
SS	Standard frequency and time signal station
TA	Space operation earth station in the amateur satellite service
TB	Aeronautical earth station
TC	Earth station in the fixed satellite service

구 분	내 용
TD	Space telecommand earth station
TE	Satellite EPIRB in the mobile-satellite service
TF	Fixed earth station in the radiodetermination-satellite service
TG	Ship earth station
TH	Earth station in the space research service
TI	Coast earth station
TJ	Aircraft earth station
TK	Space tracking earth station
TL	Mobile earth station in the radiodetermination-satellite service
TM	Earth station in the meteorological-satellite service
TN	Fixed earth station in the radionavigation-satellite service
TO	Mobile earth station in the aeronautical radionavigation-satellite service
TQ	Mobile earth station in the maritime radionavigation-satellite service
TR	Space telemetering earth station
TT	Earth station in the space operation service
TU	Land mobile earth station
TW	Earth station in the earth exploration-satellite service
TX	Fixed earth station in the maritime radionavigation-satellite service
TY	Base earth station
TZ	Fixed earth station in the aeronautical radionavigation-satellite service
UA	Mobile earth station
UD	Space telecommand mobile earth station
UH	Mobile earth station in the space research service
UK	Space tracking mobile earth station
UM	Mobile earth station in the radionavigation-satellite service
UN	Mobile earth station in the meteorological-satellite service
UR	Space telemetering mobile earth station
UT	Mobile earth station in the space operation service
UW	Mobile earth station in the earth exploration-satellite service
VA	Land earth station

참고 문헌

- [1] List of international monitoring stations(ITU), 2009
- [2] ITU, ITU-R Resolutions, 한국전파진흥협회 2008
- [3] “주파수장(일본)”, (주)삼재북, 2008
- [4] 중앙전파관리소 50년사, 1999
- [5] 중앙전파관리소 최근 10년사, 2007
- [6] 2008년도 국제단파감시 결과, 중앙전파관리소
- [7] 2008년도 인접국유입전파조사 결과, 중앙전파관리소
- [8] 외국의 전파관리 동향분석, 중앙전파관리소, 2007년
- [9]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Resolutions and A-Series Recommendations of ITU-T (Florianopolis, 2004) 번역본
- [10] 한국전파진흥협회, ITU RR(전파규칙) 번역본, 2008년
- [11] 정보통신부, ITU 전권위원회의 참가보고서, 1998, 2002 & 2006
- [12] 한국ITU연구위원회, 2007년도 ITU 국제표준화 활동보고서, 제14호, 2007.12
- [13] RA/WRC-07 참가 결과보고
- [14]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2008세계전기통신표준화총회(WTSA-08) 결과보고서, 2008.12
- [15] 손홍, 구경철, 박기식, "ITU 표준화 분야의 주요 쟁점사항 및 대응방향", 주간기술동향 99-35호, pp1-16
- [16] 박기식, 손홍, 구경철, 박종봉, "TSAG/ITU-T 제1차 회의 결과", TTA저널 제75호, 2001.5-6월, pp116-122

[17]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ITU-R 결의(2003년판) 번역본

[18] <http://www.itu.int>

[19] http://www.un.org/aboutun/chart_en.pdf

[20] <http://world.kbs.co.kr>

[21] <http://www.twrk.or.kr>